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우리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질병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만성질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만성질환을 예방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나. 따라서, 만성질환관리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예방·체험교육, 영양개선사업 및 조기검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만성질환과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기본원칙에 맞는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4조)
- 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시장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체험교실, 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사.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아.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 수립, 연구·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타 주요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향한다.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력계획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6. 만성질환의 조기검진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전담기관 등)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3. 만성질환 연구·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시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제6조)할 수 있음
 - 시장은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제7조)하고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제8조)를 제공할 전담기관 등(제9조)을 두어 추진 및 지원(제10조) 할 수 있음
 -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음(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조의 범위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국비50, 시비50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②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국비50, 시비50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③ 암관리사업

- 암예방 홍보 및 검진지원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 암센터 운영지원 : 국비50, 시비50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④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⑥ 정신건강증진사업 : 국비50, 시비25, 군·구비25

※ 전담기관 및 위원회 설치·운영과 수혜자의 경비지원(제9조, 제11조, 제12조)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 예산 소요 추정

사업명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통합건강증진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및 지원 - 국가사업으로 시도, 군·구에 예산 지원 - 지역수요도50%(인구수 30%, 재정자립도 30%, 건강수준(연령표준화 사망률)20%, 기초생활수급자비율10%, 행정비용(면적)10%)+ '12년 예산배분율50%	6,517,213천원	시, 군·구
만성질환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예방관리 홍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운영 -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200백만원 - FMTP교육비 2,250천원×10명=22백만원	222,500천원	시, 군·구
암관리사업	암예방 홍보 및 검진지원, 암센터 운영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 지역암센터 운영 152백만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1,524백만원 - 암조기검진비지원 1,043백만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357,883건) - 재가암환자 등록및관리, 홍보비 지원 등	2,731,413천원	시, 군·구

회귀난치성의료비지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회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월30만원)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70만원 이내) 등 -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이내), 저단백헤파(월14만원이내) 등	2,407,104천원	군·구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만성질환 관련 건강지표 조사 - 지역사회 건강조사 군구 지원 - 보건소당 평균사업비 900명×52,029원 - 사업홍보비 보건소당 500천원 - 위탁사업비 보건소당 46,325천원	352,544천원	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 보건소에 자살예방전담인력 배치 등 13명×19,000천원	247,500천원	군·구

나. 추계 결과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은 2015년 125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687억9천4백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기금), 시비, 군·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최재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입	통합건강증진	4,329,475	4,545,948	4,773,246	5,011,908	5,262,503	23,923,080
	만성질환예방 관리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575,000
	암관리사업	1,828,911	1,920,356	2,016,374	2,117,193	2,223,052	10,105,886
	희귀난치성의 료비지원	1,604,200	1,684,410	1,768,630	1,857,062	1,949,915	8,864,217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352,544	352,544	352,544	352,544	352,544	1,762,720
	정신건강증진 사업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소계	8,395,130	8,783,258	9,190,794	9,618,707	10,068,014	46,055,903
세출	통합건강증진	6,517,213	6,843,073	7,185,227	7,544,488	7,921,713	36,011,714
	만성질환예방 관리	222,500	222,500	222,500	222,500	222,500	1,112,500
	암관리사업	2,781,413	2,920,483	3,066,507	3,219,833	3,380,824	15,369,060
	희귀난치성의 료비지원	2,407,104	2,527,459	2,653,832	2,786,523	2,925,849	13,300,767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352,544	352,544	352,544	352,544	352,544	1,762,720
	정신건강증진 사업	247,500	247,500	247,500	247,500	247,500	1,237,500
	소계	12,528,274	13,113,559	13,728,110	14,373,388	15,050,930	68,794,261
재원 조달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 비		8,395,130	8,783,258	9,190,794	9,618,707	10,068,014	46,055,903
시비	소 계	4,133,144	4,330,301	4,537,316	4,754,681	4,982,916	22,738,358
	일반회계	4,133,144	4,330,301	4,537,316	4,754,681	4,982,916	22,738,35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4,074,075	4,269,630	4,474,572	4,689,352	4,914,441	22,422,070
민 간							
기 타							